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h·well
국민건강보험  서울강원지역본부

목 차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01. 총칙

02.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03. 재가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04.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액산정 기준

05. 기타 안내사항



01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총칙

1. 총칙



■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5조의5제3항, 제38조제6항 및 제8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8조, 제22조, 제27조의3, 제32조 및 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급여제공 일반원칙)

-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 우선 원칙
- 1, 2등급: 재가 또는 시설급여 / 3~5등급: 재가급여 원칙(일부 시설급여 가능)
인지지원등급: 주·야간보호(치매전담실 포함), 치매가족휴가제(단기보호), 복지용구

■ 제3조(적정급여제공 등)

-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에 따라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됨

1. 총칙



■ 제4조(급여제공 중복제공 금지)

- 타 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미신고시설 포함) 입소 중 제공 불가
- 의료기관 입원 중 제공 불가
- 시설급여기관 입소 중 재가급여, 특별 현금급여 제공 불가
- 방문간호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가정간호와 동일한 날에 제공 불가
 - ※ 치위생사가 제공하는 것은 제외
 - ※ 시설급여와 가정간호는 중복 급여 가능
-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 쉼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은 중복 제공 불가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02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2.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 제6조(장기요양급여제공의 절차)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지자체 신고한 직종으로 해당 기관에서 근무해야 함
- 시설장(관리책임자) 상근하여야 하며, 상근시간 외에도 응급상황 등에 항상 대비
 - ※ 상근의무란 휴일 기타 근무를 요하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 일정한 근무계획하에 매일 소정의 근무시간 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것
 - ex) 공무원의 상근시간: 평일 09시~18시
- 가정방문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기관 시설장은 해당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업무 수행 불가
 - ※ 다만, 간호사인 시설장의 방문간호 제공은 가능

■ 제7조(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

- 급여계약통보서의 내용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 후 관리 및 수급자에게 제공
- 가정방문급여 급여제공기록지 수기 작성 시 주 1회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
- RFID 사용,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시설급여 등의 경우 월(1일부터 말일) 1회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
 - ※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가정방문급여 제공하는 경우 요청 시 제공

2.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 제9조(비밀보장 및 학대행위의 금지)

-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 및 가족요양비와 관련된 급여를 제공한 자는 법 제62조에 따라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금지
- 종사자는 성, 연령,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등의 사유로 급여제공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 금지**

■ 제10조(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급여개시일부터 가입
- 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기관은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배상책임보험 가입 (퇴소자, 외박자, 미이용일 수급자 제외)
- 가정방문급여기관: 실제 급여를 제공하는 종사자를 기준으로 가입

※ 기관지정일: 지자체로부터 기관 지정 받은 날

※ 급여개시일: 최초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날



2.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 제11조2(인건비 지출비율)

- 1년(1월1일~12월31일)간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에서 장기요양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인건비 범위: 기본급여, *수당, 장기근속 장려금, 퇴직적립금, 사회보험기관부담금 등
 - * 수당: 시간외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기타수당 등
 - ** 기타수당: 명절수당, 가족수당, 성과금, 정액급식비, 교통비 등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비용
(복리후생, 업무추진 및 기관운영비적 성격의 유니폼비, 회식비, 경조사비, 교육훈련비 등은 인건비 미포함)
- 제11조의2제5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를 장기요양요원으로 인정
 1.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시설장 또는 사무국장이 배치된 기관의 사회복지사
 2. 방문요양기관의 {사회복지사, 제57조제1항 각 호의 가산을 받는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실무경력 60개월 이상)} 수를 제58조제4항의 가산인정 인원수만큼 인정

※ 제58조제4항

- 사회복지사 등의 가산인원 인원수는 가산을 적용받는 급여의 수급자 수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
 1. 수급자 수 15명 이상 30명 미만: 1명
 2. 수급자 수 30명 이상부터: 30명 이하 단위로 1명씩 추가

2.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 제11조2(인건비 지출비율)

구분	*장기요양요원	비율(%)	
		2022	2023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86.6	86.6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49.8	50.1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60.4	60.9
노인요양시설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61.1	61.4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65.5	65.8
주·야간보호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48.7	49.0
단기보호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59.0	59.3

2.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 제11조2(인건비 지출비율)

구분	장기요양급여비용 포함항목	제외항목
방문요양	제11조의4 장기근속장려금 제18조 방문요양 급여비용 제19조의2 방문요양 중증 수급자 가산 제20조 급여비용 가산 제36조의3 치매가족휴가제급여비용 제58조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금액	제11조제3항 요양보호사 직무교육비 제21조 원거리교통비용
방문목욕	제11조의4 장기근속장려금 제25조 방문목욕 급여비용	제11조제3항 요양보호사 직무교육비
방문간호	제11조의4 장기근속장려금 제20조 급여비용 가산 제28조 방문간호 급여비용 제29조 방문간호급여 간호(조무)사 가산	제21조 원거리교통비용

2.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 제11조4(장기근속 장려금)

※ 대표자는 장기근속장려금 산정 불가

- (대상) 일정기간 이상 동일기관에서 하나의 직종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

직군 분류	급여유형	직종	조건
제1항 제1호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월 120시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36개월 이상
제1항 제2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직접서비스 제공)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치과 위생사	월 60시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36개월 이상
제1항 제3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고시 제57조의 업무수행)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팀장급 요양보호사	월 120시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36개월 이상
제1항 제4호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전량 직접 조리하여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의 *영양사, 조리원	월 120시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36개월 이상

※ '22.1.1일 이전 근속개월부터 근무개월 수 산정가능하나 '22.1월부터 장기근속장려금 지급대상

근무기간별 지급액		
36개월 ~ 60개월 미만	60개월 ~ 84개월 미만	84개월~
60,000	80,000	100,000

※ 위 금액에는 사회보험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이 포함되어 있음

2.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 제11조4(장기근속 장려금)

● ‘계속 근무’ 인정 사유 (코드번호 3,4,5,6,7은 근무시간으로 산정가능)

코드	내용
1	종사자가 휴직 및 퇴사 후 3개월 이내 해당기관으로 복직 또는 재취업하는 경우
2	종사자가 직종의 변경없이 월 120시간(60시간) 미만 근무한 달이 3개월 이내인 경우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 후 해당 장기요양기관으로 복직하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에 산입함
4	대표자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으로 기관기호 또는 급여유형이 다른 기관에서 근무한 경우
5	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급여유형이 변경되어 장기요양기관기호가 변경된 경우
6	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합병 또는 포괄적 양수·양도 등으로 인해 기관기호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직원에 대한 포괄적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7	제1항2호에 해당하는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직종의 변경없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종사자로 변경한 경우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근무하지 못한 경우
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월 근무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
10	근로기준법에 따른 구제명령이 확정된 부당해고 기간동안 근무하지 못한 경우
1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 후 해당 장기요양기관으로 복직하는 경우 (3년)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03 재가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3. 재가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 제13조(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기준)

- 2023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 월 한도액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23년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는 급여비용 항목

- 제21조의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급여의 원거리 교통비용
- 제2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이용한 방문간호급여비용
- 제29조의 방문간호급여의 간호(조무)사 가산금
- 제34조의 주·야간보호급여의 이동서비스비용 및 제35조의 목욕서비스 가산금
- 제36조제3항 단서 및 제36조의3에 따라 이용한 단기보호급여비용 및 치매가족휴가제 급여비용
- 제19조2의 방문요양급여 중증 수급자 가산
- 제78조의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 제5장 제2절에서 정하는 가산금

- 월 한도액 적용기간: **매월 1일부터 말일**

단, 1.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받거나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된 경우 기본 월 한도액 적용

2.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 적용

3. 재가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 제14조(동일시간 중복급여 제공 금지)

- 2종류 이상의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를 동일 시간, 동일 수급자에게 함께 제공 불가
-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만 방문요양+방문간호, 방문목욕+방문간호 중복 가능
※ **중복하여 제공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

■ 제15조(가정방문급여 일반원칙)

- 수급자의 가정(가정집 등 수급자의 사적인 공간)을 방문하여 제공
- 해당 방문시간동안 수급자 1인에게 전적 제공
- 동일가정 거주 수급자 2명 이상인 경우 동시 또는 순차적 급여 제공 가능
단,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2인 이상의 수급자에게 동시 또는 순차제공 불가
※ **동시 또는 순차적 급여제공의 의미**: 식사 준비 등 2인에게 동시에 급여를 제공하고
세수나 이동도움 등 수급자 개개인에게 차례대로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
- 수급자와 가족관계가 아닌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2인 이상과 동거하며 급여제공 불가

3. 재가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 제17조(방문요양 제공기준)

-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인지관리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등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
- 가사활동지원 1회 방문당 최대 90분 범위 내에서 제공하도록 노력
- 정서지원은 1회 방문 당 최대 60분 범위 내에서 제공

※ 프로그램관리자 업무수행

- 프로그램관리자: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란 시설장(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로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후 해당 기관에 상근**하며 다음의 업무 수행
 1. **매달 급여제공 전에** 수급자의 개인별 특성, 욕구, 기능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프로그램 계획**
 2.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을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급여제공 지도**
 3. 치매가 있는 수급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진행**
- 월 1회 이상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 중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업무 수행
- 수급자의 사망, 입원, 월 중 계약종료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예외
- 프로그램 관리자가 수급자의 가정을 월 1회 이상 방문하고 고시 제57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제57조 방문으로 인정
- 프로그램관리자는 업무수행내용을 작성, 보관(별지 제24호 서식)

3. 재가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 프로그램관리자 /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비교

구분	프로그램 관리자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
관련 고시	고시 제17조, 제19조 등	고시 제57조, 제58조 등
가능 직종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팀장급 영양보호사
방문대상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수급자	가산을 적용받고자 하는 급여종류의 모든 수급자
가산적용여부	없음	가정방문급여 수급자 수가 15명 이상인 경우 방문비율에 따라 산정
미방문한 경우	미방문한 수급자의 해당월 전체 급여비용 산정불가	가산금 없음

- 프로그램 관리자가 수급자의 가정을 월 1회 이상 방문하고 고시 제57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제57조 방문으로 인정

3. 재가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 제17조(방문요양 제공기준)

● 5등급 수급자 방문요양 제공기준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치매전문 요양보호사가 제공
- 1일 1회 한하여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
- 60분은 반드시 인지자극활동, 나머지 시간은 일상생활 함께하기 제공

● 5등급 수급자의 일반방문요양 예외 인정

- 5등급 수급자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만 인정
-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시간 전·후로 가정에서 옷 벗고 입기 및 식사 도움 등 방문요양급여를 1일 2회 범위 내 1회 2시간까지 제공 가능
 - 1) 5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급여를 1일 8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 2) 5등급 수급자가 천재지변, 입원, 사망 등으로 주·야간보호급여를 1일 8시간 미만으로 이용하는 경우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주·야간보호급여와 동일한 날에 제공 불가

3. 재가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 제18조(방문요양 급여비용)

● 2023년 방문요양 급여비용(1회 방문당)

구분	분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6,190
가-2	60분 이상	23,480
가-3	90분 이상	31,650
가-4	120분 이상	40,280
가-5	150분 이상	46,970
가-6	180분 이상	52,880
가-7	210분 이상	58,930
가-8	240분 이상	65,000

3. 재가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 제19조(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

● 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

- 동일 수급자에 대하여 '가-1'부터 '가-6'까지의 급여비용을 **1일 3회까지 산정 가능(회당 방문간격 2시간 이상)**
-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
- 1일 2회 이상 제공하는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내용과 요청사유 기재
- '가-7' 내지 '가-8'의 급여비용은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 한하여 **1일 1회 산정 가능**
(단, '가-1'부터 '가-6'과 같은 날에 산정 불가)

-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6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 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4일에 한하여 210분 이상 연속하여 제공 가능**
 - 수급자(보호자)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로 급여제공기록지에 동의 내용, 요청사유 작성
 - 연속하여 제공 시, 급여제공비용은 2회로 분할 산정, 최초 270분에 대해서는 '240분 이상' 수가를 산정, 270분 초과하는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제18조의 각 분류에 따른 금액을 산정
※ 단, 1회 480분 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한 경우는 '240분 이상' 수가를 2회 산정
 - 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에게 1회 210분 이상 방문요양급여를 연속하여 제공하는 경우 '210분 이상' 수가를, 240분 이상 270분 미만으로 제공한 경우 '240분 이상' 수가를 산정

3. 재가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 제19조(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

-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
(다음 날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
- 요양보호사 2인이 동시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의 급여비용 산정
 - 수급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동일기관의 요양보호사 2인이 동시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 별로 각각 '가-1'(30분 이상)부터 '가-5'(150분 이상)까지의 비용을 산정
 -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내용과 급여제공 당시 수급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기재
- 요양보호가 동일 가정에 거주하면서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 요양보호사와 수급자의 관계가 고시 제23조제1항에 따른 가족이 아님에도 요양보호사가 2인 이상의 수급자와 동일 가정에 동거하면서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 산정 불가

3. 재가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 제19조(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

– 제17조제5항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만 급여비용 인정

※ 1-5등급 치매 수급자를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1회 120분 이상 제공(그 중 60분은 반드시 인지자극활동 제공)

– 급여를 120분 미만 제공하거나 인지자극활동을 60분 미만 제공하더라도 다음의 사유는 인정

1. 천재지변, 수급자 입원, 사망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2. 급여제공을 시작한지 1개월에 이르지 않아 수급자와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
3.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급여로 인지자극활동을 60분 이상 제공한 경우

● 프로그램 관리자가 업무수행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월에는 일체의 급여비용 산정 불가

※ 예외인정 사유

1. 월 중 프로그램 관리자가 퇴사한 경우
2. 천재지변, 수급자의 입원, 사망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3. 재가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 제19조의2(방문요양급여 중증 수급자 가산)

- 요양보호사가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을 1회 180분 이상 제공한 경우
수급자 1인당 일 3,000원 가산
- 가산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으며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지급

■ 제20조(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급여비용 가산)

-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급여제공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비용을 가산하며,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 미적용

	22시~06시	*일요일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
가산비율	30%	30%	50%

※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일요일

※ 유급휴일: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

※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30% 가산**(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제외)
- 급여비용을 가산하는 날에는 해당 사유를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 또는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

3. 재가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 제23조(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산정 기준)

- 가족의 범위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장기요양의 장은 수급자의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공단에 통보, 가족관계가 변경된 경우에도 통보
- 가족관계를 누락하거나, 가족관계가 사실과 다를 경우 급여비용 산정 불가
-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 종사하며 근무한 시간의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인 경우 급여비용 산정불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시간은 포함하지 않음
- 가족인 방문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급여비용은 가산 적용 불가
- 가족인 수급자가 방문요양을 제공한 날에는 동일한 날에 다른 방문요양 산정 불가
- 1일 1회에 한하여 매월 20일 범위 내에서 산정 가능

※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월 20일 초과 가능

1.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2. 수급자가 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상의 '행동변화영역'에서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이 하나 이상 확인되고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3. 재가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 제23조(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산정 기준)

● 가족관계 예시

분류	내용
배우자	남편, 처
직계혈족	부, 모, 조부, 조모, 증조부, 증조모, 고조부, 고조모, 외조부, 외조모, 외증조부, 외증조모, 외고조부, 외고조모, 자녀, 손, 증손, 고손, 외손, 외증손, 외고손 등
형제자매	형, 누나, 언니, 동생(매, 제)
직계혈족의 배우자	며느리(자부), 사위(서), 손자며느리, 손자사위, 외손자며느리, 외손자사위, 증손부 등 ※ 직계존속의 재혼에 의한 배우자 포함(계부, 계모 등)
배우자의 직계혈족	며느리(자부), 사위(서), 손자며느리, 손자사위, 외손자며느리, 외손자사위, 증손부 등 ※ 직계존속의 재혼에 의한 배우자 포함(계부, 계모 등)
배우자의 형제자매	시동생, 시아주머니(시숙), 시누이, 처남, 처형, 처제 등

※ 수급자를 기준으로 가족관계를 판단(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종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

3. 재가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 제24조(방문목욕급여 제공기준)

● 방문목욕급여 제공 기준

-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욕조를 활용한 전신 입욕 등의 방법으로 **60분 이상 제공**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2인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의자 활용, 침상목욕, 대중목욕탕에서 제공한 경우도 인정)
- 목욕 준비, 입욕 시 이동 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 입히기, 목욕 후 주변 정리 포함
- **입욕 시 이동 보조, 몸 씻기는 2인 이상 요양보호사 제공**

● 제공 방법

1.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 수급자의 가정 방문(이동식 욕조, 가정 내 욕조)
- 법 제31조에 따라 목욕실이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목욕 설비가 갖추어진 대중목욕탕

2. 차량을 이용한 경우

-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제공방법: (차량내 목욕) 차량 내에서 전적으로 목욕을 제공
- ~~제공방법~~ (가정내 목욕) 목욕 차량의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 목욕을 제공
-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시, 군, 구 지자체에 신고된 차량으로 제공**

3. 재가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 제25조(방문목욕 급여비용)

● 방문목욕 급여비용(2023년)

분류번호	분류	금액(원)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2,160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4,070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6,250

■ 제26조(방문목욕 급여비용 산정방법)

-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각 분류에 따른 급여비용의 80%만 산정
- 이동보조와 몸 씻기 등 급여 제공 과정 전체를 요양보호사 1인이 단독으로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 산정 불가
다만,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수급자의 수치심을 사유로 부득이하게 몸 씻기 과정만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경우 “차량 미이용 목욕” 급여 비용의 80% 산정(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 70% 산정)하며 부득이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
-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목욕에 필요한 용품의 구입비용 포함, 수급자 추가부담 없음
- 방문목욕 급여는 주 1회(월요일~일요일)만 산정 가능
 -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

3. 재가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 제27조(방문간호급여 제공기준)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른 간호, 진료의 보조, 구강 위생 등 서비스 제공
- 수급자의 상태변화 등으로 당초의 방문간호지시서와 다른 내용의 간호, 처치 등이 필요한 경우 방문간호지시서 발급의사와 상의한 후 지시에 따라 시행, 반드시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
- 예방적 건강관리
 - 예방관리를 위한 방문간호 월 1회 제공 가능
 - 대상: 1~5등급 수급자 중 간호처치 영역 한 개 이상 체크된 수급자(월 한도액 미포함, 본인부담금 있음)
- 치매수급자 관리
 - 최초 등급 판정 받은 1~5등급 치매수급자 방문간호 4회 무료 제공
 - 등급 판정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총 4회 범위 내에서 월 2회까지 이용 가능(월 한도액 미포함)

3. 재가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 제28조(방문간호 급여비용 및 산정방법)

● 방문간호 급여비용(2023년)

분류번호	분류	금액(원)
다-1	15분 이상 ~ 30분 미만	39,440
다-2	30분 이상 ~ 60분 미만	49,460
다-3	60분 이상	59,500

● 방문간호 급여비용 산정방법

- 방문간호 급여비용은 처치에 사용된 재료비와 검사료를 포함하며, **수급자 추가 부담 없음**
- 심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급여 제공 시 가산 가능(가족인 간호사가 제공한 경우는 가산 적용 불가)

구분	대상	내용	본인부담금	월한도액
예방적 건강관리	1~5등급 수급자 중 간호처치영역 한 개 이상 체크된 수급자	방문간호 월1회	있음	미포함
치매수급자 관리	최초 등급받은 1~5등급 수급자	방문간호 월2회 (60일 이내 총 4회)	없음	

3. 재가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 제28조(방문간호 급여비용 및 산정방법)

● 가족인 간호사의 방문간호 급여비용 산정방법

- 가족관계통보: 고시 제23조제2항을 준용하여 가족인 간호사가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 공단에 통보
- 가족인 간호사가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 1인에 대하여 1일 1회, 월 8일의 범위 내에서 급여비용 산정
- 가족인 간호사가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은 같은 날 다른 방문간호 산정 불가

● 간호사 등 2인이 동시에 방문간호를 제공한 경우의 제공기준(고시 제28조제7항)

- 수급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동일기관의 간호사 등 2인이 제공 가능
- 2인 중 1인은 반드시 간호사가 제공
- 급여비용은 종사자별로 각각 '다-1'(15분 이상 30분 미만)부터 '다-2'(30분 이상 60분 미만)까지의 비용 산정
-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동의내용과 급여제공 당시 수급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반드시 기재

■ 제29조(방문간호급여 간호(조무)사 가산)

- 간호사는 방문당 3,000원 가산 ... 시설장(관리책임자)인 경우는 제외
- 간호조무사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제27조제5항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 경우 및 5등급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 방문당 1,500원 가산

3. 재가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 제36조의2(치매가족휴가제 급여제공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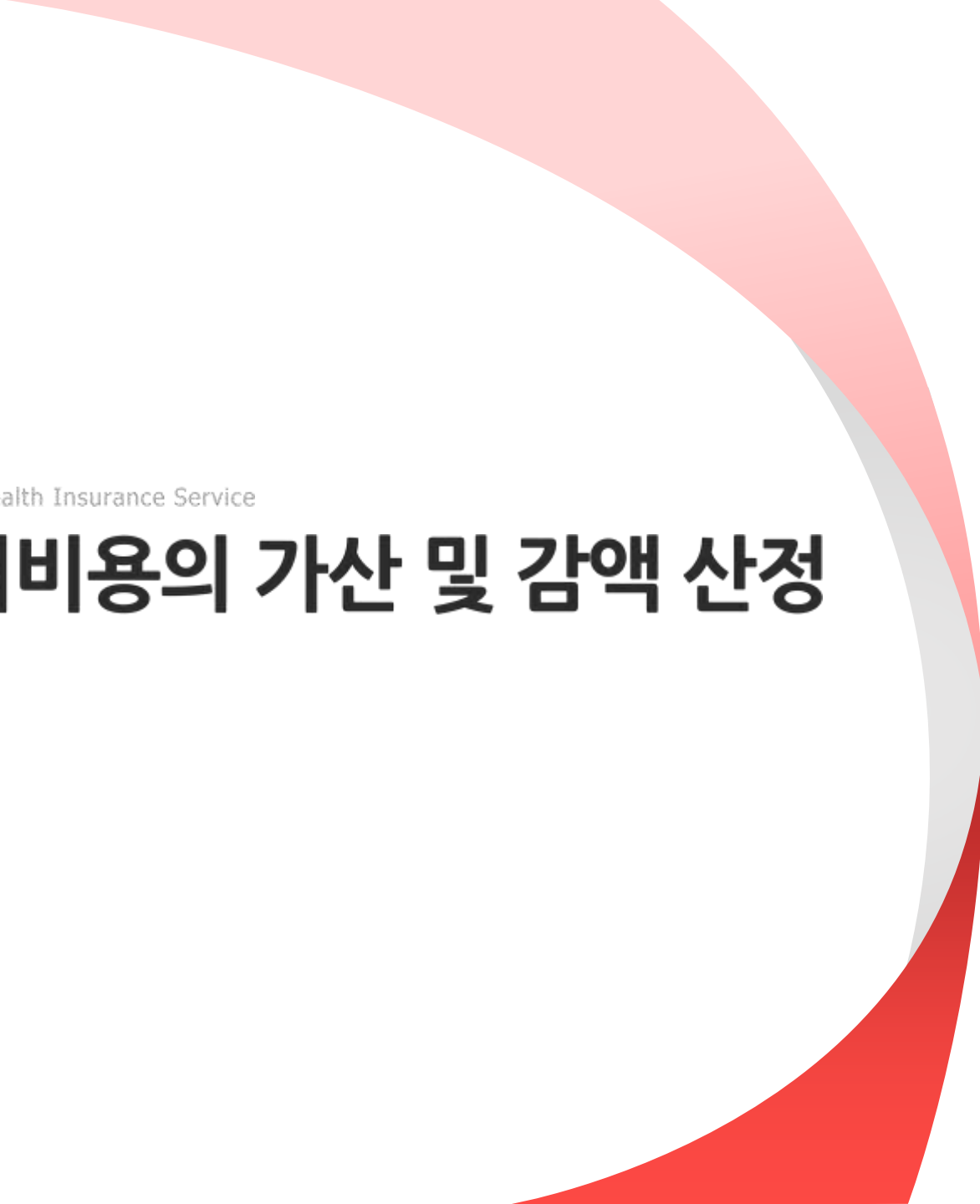
- 치매가족휴가제: 가정에서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위하여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 ① 연간 9일 이내의 단기보호급여를 이용하거나,
 - ② 연간 18회(1회당 12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2회=1일) 종일방문요양급여 이용 가능
 - 치매가족휴가제 단기보호급여 이용가능대상: 1~5등급 치매수급자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 치매가족휴가제 종일방문요양급여 이용가능대상: 1~2등급 치매수급자
- 종일방문요양 제공가능기관
 - : 장기요양기관 지정서에 방문요양급여와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 중 1개 이상 복합운영기관에서 제공가능
- 종일방문요양급여 2회 이상 *연속 제공하는 경우
 - : 간호(조무)사 급여제공 중 1회 이상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수급자의 상태 확인 및 요양보호사 지도·감독 후 급여제공기록지 특이사항란에 업무수행내용, 방문일시, 본인성명 등 작성
 - * 연속제공: 1회 제공 후 2시간 미만 내에 연속하여 제공하는 경우

3. 재가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 제36조의3(치매가족휴가제 급여비용 산정방법)

- 종일방문 1회 제공 시 기본수가: 91,690원, 1회 제공당 가산금: 73,100원
- 종일방문요양 가산: 일요일 또는 심야시간(22시부터 다음날 06시) 제공 시 기본 수가(91,690원)의 30%,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공 시 기본 수가(91,690원)의 50% 가산
- 요양보호사 1명이 동일가정 수급자 2명에게 제공 시 각 수급자에 대하여 급여비용의 80% 산정 (단, 가산금은 1명에 한해서 산정)
- 가족인 요양보호사이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자인 경우 종일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불가



04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액 산정



4.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액 산정

■ 제48조(인력배치기준)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배치하며,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 반올림
- 계산한 결과가 0.5명 미만인 경우 기본 1명 배치

[별표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직원배치기준

구분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방문요양	1명	1명 (수급자 15명 이상)	-	15명 이상 (농어촌지역의 경우에는 5명 이상)
방문목욕	1명	-	-	2명 이상
방문간호	1명	-	1명 이상	-



4.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액 산정

■ 제49조(월 기준 근무시간)

- 월 기준 근무시간 = 근무가능일수(토, 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외) × 8시간
- 월 중 사업개시 기관, 휴·폐업 기관: 해당 월 사업운영기간(토, 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외) × 8시간
- 근무시간이 매월 말일에서 익일인 다음 날 1일까지 연속되는 경우 근무가 시작된 달의 월 기준근무 시간으로 산정(22.3.~)

■ 제50조(근무인원)

- 지자체(시,군,구) 신고 인력 중 해당기관에서 **신고 당시 기재한 직종으로 근무**하는 직원



4.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액 산정

■ 제51조(근무인원 수 산정방법)

● 근무인원 수

-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신고한 직종으로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실 근무해야 '근무인원 1인' 으로 인정
-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 사무원, 관리인이 부재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다른 직원이 그 업무를 일부 수행하고 근무시간 인정가능
- 근무시간이 월 기준근무에 미치지 못하는 동일 직종 종사자들의 근무시간을 합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나눈 결과값을 근무인원 수로 산정 가능

※ 치매전담실과 일반실의 요양보호사는 구분하여 계산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에서 일반 요양보호사가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배치인력은 0.5명으로 산정

- 주·야간보호기관 보조원(운전사) : 월 기준 근무시간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1명으로 인정
- 소수점 이하의 계산
 1. 가산산정인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절사
 2. 감액산정인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는 절사, 소수점 첫째자리가 4이하인 경우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사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 등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무시간 인정



4.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액 산정

■ 세부사항 제12조제1항(근무인원 수 산정방법)

- 다음의 사유가 **유급인 경우 1일 최대 8시간 인정**

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차휴가

나.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한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 사산휴가 중 최초 60일(다태아는 75일)

※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하여 연속적으로 계산

다. 경조사휴가(**사유발생일부터 3일 이내** 기준(2022년 4월부터)으로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 **분할사용 불가**)

- 본인의 결혼: 5일

- 자녀의 결혼: 1일

- 본인·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 5일

- 본인·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의 사망: 2일

-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3일(2022.4월부터 2일 -> 3일로 변경)

-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사망: 1일(2022.4월 신설)



4.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액 산정

■ 세부사항 제12조제1항(근무인원 수 산정방법)

● 다음의 사유가 유급인 경우 1일 최대 8시간 인정

라. 직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 연간 30일 이내

※ 병가의 경우 처방전 등 사유를 증빙 할 수 있는 자료 보관 (단, 7일 이상 연속하여 병가를 사용할 경우 진단서)

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의한 배우자의 출산휴가:

10일(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하되, 1회에 한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

바.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는 대표자인 시설장의 휴가: 연간 10일 이내(2022.4월~)

사.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종사자는 3일의 범위 내에서

연차 미리 사용 가능

※ 적용조건 1. 대표자와 종사자 사전합의

※ 적용조건 2. 종사자의 요청

※ 적용조건 3.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모두 충족

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의한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인 최초 1일



4.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액 산정

■ 세부사항 제12조제1항(근무인원 수 산정방법)

- 다음의 사유가 유급인 경우 1일 최대 8시간 인정
 - 「근로기준법」 제10조에 의한 공민권 등의 행사
 - 「모자보건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의한 임신부의 건강진단
 -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3호에 의한 국가건강검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 다음의 사유가 유급인 경우 1일 최대 8시간 인정
 - 「근로기준법」 제75조에 의한 수유시간
 -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 의한 임신부 근로 단축시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의한 육아기 근로단축 시간



4.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액 산정

■ 세부사항 제12조제1항(근무인원 수 산정방법)

- 근로시간 중 참석한 교육 및 출장 등 1일 8시간 내에서 실제 소요된 시간 인정
 -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보수교육의 경우 지자체 신고한 직종 관련인 경우에 한함
 -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 2) 「의료법」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의료인 보수교육
 -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보수교육
 - 4) 「국민영양관리법」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보수교육
 - 5)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교육
 - 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등 교육
 - 7)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교육
 - 8)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교육
 - 9)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 10)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교육
 - 11)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요원 교육
 - 12) 기타 타 법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한 교육



4.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액 산정

■ 세부사항 제12조제1항(근무인원 수 산정방법)

- 근로시간 중 참석한 교육 및 출장 등 1일 8시간 내에서 실제 소요된 시간 인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평가지표에 제시되어 있는 교육
(기관유형 및 직종관련 교육)
 - 기타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장기요양 직무 관련 교육(치매전문교육시간 포함)
 - 외부기관에서 주관하는 전문성강화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직무관련 교육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는
연간 16시간에 한하여 인정

※ 자격 취득 또는 자기계발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해외연수, 체육행사, 기념식 등 사기진작 등을 위한 행사에 참여한 시간은 포함하지 않음



4.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액 산정

■ 세부사항 제12조제2항(근무인원 수 산정방법)

-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 근무로 인해, 월 기준근무시간을 초과한 종사자의 경우 유급휴일 근무로 초과된 근무시간을 유급휴일 일자별 1일 최대 8시간 내에서 이월하여 근무시간 인정가능

구분	적용 기준
유급휴일	▶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현충일 ▶ 신정, 설·추석 연휴 3일,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부처님 오신날 ▶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기타 수시 지정일(임시공휴일) ▶ 설·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 일요일 등으로 인한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 유급휴일 근무로 인해 월 기준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종사자
유급휴일대체 적용일자	▶ 유급휴일 근무한 달의 익월부터 대체 적용 가능 ▶ 회계연도(해당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안에 적용
유급휴일대체 적용가능시간	▶ 유급휴일 근무로 인해 월 기준 근무시간을 초과한 경우 근무일자 별 실제 근무시간 중 1일 최대 8시간 내에서 인정, 분할 사용 불가
보관서류	▶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한 증빙자료 ▶ 세부사항 별지 제27호 유급휴일 근무관리대장



4.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액 산정

■ 세부사항 제12조제3항(근무인원 수 산정방법)

- 고시 제51조제1항과 관련하여 종사자별 예정된 근무일정에 따라 변경없이 규칙적으로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월 기준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다음에 한해 근무인원 1인으로 인정
 1. 야간근무를 포함한 1일 3교대, 1일 2교대 근무형태로 근무한 요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
 2. 특정요일에 휴무하는 종사자
 - ※ 단, 월 중 근무일수가 연차 유급휴가 등을 포함하여 15일 이상,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
 - ※ 종사자별 근무일정에 따른 예정된 휴무일에 세부사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연차, 경조사, 유급휴일대체 등) **해당하는 사유 적용 시 규칙적인 근무형태로 인정 불가**



4.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액 산정

■ 제53조(급여비용 가산의 유형)

가산 유형	적용되는 기관 유형
인력 추가 배치	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방문요양급여를 포함하여 1개 이상의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간호사 배치	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
야간직원배치	시설급여기관, 단기보호기관
맞춤형서비스 제공	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 ※ 제70조의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제외



4.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액 산정

■ 제54조(급여비용 가산 산정의 원칙)

● 감액유형별 가산 적용여부

구분	인력추가배치가산	간호사배치가산	야간직원배치가산	맞춤형서비스 제공가산
인력배치 기준위반감액	X	O	O	O
정원초과 감액	X	X	X	X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감액	O	O	O	O

- 일반실과 치매전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기관은 어느 하나의 실에서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실의 요양보호사 추가 배치 가산 적용 가능
- 1개 이상의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경우는 급여유형별로 가산 적용
- 겸직인 직원, 「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전후휴가 중인 직원, 제67조제2항에 따라 퇴사특례를 적용받는 직원은 가산적용을 위한 근무인원수에 포함하지 않음
- 공단은 가산을 받는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제공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서비스모니터링 실시



4.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액 산정

■ 제57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 방문요양급여를 포함하여 1가지 이상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수급자 수가 15명 이상
-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팀장급 요양보호사 중 1명 이상을 배치하여 가산 업무 수행
 - ※ 팀장급 요양보호사: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실무경력 5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60개월 이상)
- 방문요양 수급자 수가 15명 이상인 기관은 사회복지사 1명 이상 배치
- 가산을 적용 받고자 하는 급여종류의 모든 수급자의 가정을 매월 1회 이상 급여제공시간 중 방문하여, 적정 서비스 제공 여부 확인 및 기록, 매월 수급자 욕구사정 및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기록
- 불가피한 사유로 업무 수행 제한 시 예외 인정 범위
 1. 수급자의 사망, 입원 등 사유로 가정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
 2. 월 중 급여제공을 종료한 경우
 3. 급여제공이 18시 이후 06시 이전에만 이루어져 급여제공시간에 방문이 어려운 경우
 - ※ 단, 수급자와 급여제공자 면담 필수



4.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액 산정

■ 제58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금액 등)

●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금액 산출 방법

$$\text{가산금액} = \text{해당 월 가산 기준금액} \times \frac{\text{가산 점수의 합}}{\text{입소자 수}} \times \text{서비스유형점수}$$

구 분	내 용
가산기준금액	수급자 별 급여비용 합의 85% (종일방문요양급여비용 제외)
가산점수	• 의무배치 사회복지사 1인 1.8점 • 사회복지사 : 1.2점 • 간호(조무)사, 팀장급 요양보호사 : 1점 ※ 가산 인정 인원수가 2명 이상인 경우 0.2점 추가로 산정
입소자수	해당 월 가산을 적용 받고자 하는 급여유형의 급여를 제공한 수급자 수 ※ 종일방문요양 급여만 이용한 수급자는 제외
서비스 유형점수	1.8점



4.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액 산정

■ 제58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금액 등)

-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금액 산정 방법 등
 - 수급자 가정방문비율에 따라 가산 점수 차등 적용
 - 모든 수급자 가정 방문한 경우, 1인당 가산점수의 100% 적용
 - 90% 이상의 가정 방문한 경우, 1인당 가산점수의 80% 적용
 - 80% 이상의 가정 방문한 경우, 1인당 가산점수의 50% 적용
- 수급자 수가 30인 이상인 기관에서 사회복지사를 1인만 배치한 경우, 매월 수급자를 30인 이상 방문한 경우 가산 점수 100% 산정(단, 모든 수급자에 대해 3개월마다 1회 이상 방문 상담 업무 수행해야하며, 위반한 경우 가산점수 일체를 미산정)
 - ※ 수급자 수 규모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가산 인정 인원수
 - 수급자 수 15명 이상 30명 미만: 1명, 이후 수급자 수 30명 이상부터 30명 이하 단위로 1명씩 추가



4.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액 산정

■ 제63조(급여비용 감액 산정의 유형)

감액산정 유형	적용되는 기관 유형
정원초과	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인력배치기준위반	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모든 장기요양기관

■ 제64조(급여비용 감액 산정의 원칙)

- 감액이 중복되는 경우 합산하여 적용
- 정원초과 감액과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의 합이 급여비용의 40%를 초과할 때는 급여비용의 60% 산정



4.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액 산정

■ 제68조(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액)

- 가정방문급여
 - 미가입 종사자가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 해당일 급여비용의 90%를 산정
- 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
 - 미가입 시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미가입 기간 동안 급여비용의 90%를 산정

■ 제69조(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예외)

- 종사자가 가족 및 민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수급자에게만 급여 제공 하는 경우
- 수급자가 공휴일에 입소, 신규종사자가 공휴일부터 근무로 당일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05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기타 안내사항

5. 기타 안내사항



■ 관련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게시 위치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 전문
(경로) 알림·자료실 > 자료실 > 법령 자료실
- 2023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동영상 교육
(경로) 종사자마당 > 기관종사자 교육코너 > 직무 관련 자료실
- 주요 개정내용 및 Q&A
(경로) 알림·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
(경로) 제도소개 > 급여기준 및 수가 > 급여기준조회
- 장기요양기관 업무 안내 책자 게시
(경로) 종사자마당 > 기관종사자 교육코너 > 장기요양기관 업무 안내 e-Book
- 재가 및 시설급여제공 매뉴얼
(경로) 종사자마당 > 기관종사자 교육코너 > 직무 관련 자료실

감사합니다

